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5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파라마운트(주)(조정근, 신순주), ② (주)테크이코(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GCL방수재, 벤토매스틱, 쉘스트랩을 이용한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PAM, SAP이 함유된 GCL(Geosynthetic Clay Liner) 방수재와 이의 포설전에 바탕을 처리하는 벤토매스틱, 포설후에 이음부를 처리하는 쉘스트랩의 방수부자재가 이용되어 방수층을 형성하는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범위>

PAM, SAP이 함유된 GCL 방수재와 바탕 처리용 벤토매스틱, 이음부 처리용 쉘스트랩의 방수부자재가 이용되는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7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보급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5조·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각 정책협의회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

마.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및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도선사업을 하는 자, 원양어업을 하는 자 등 해양수산 관련 법에 근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